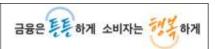


보도참고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8.14.(수)		
담당부서	외환감독국 외환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임종건	(02-3145-7920)
		담당자	팀 장	손성기	(02-3145-7938)

「카카오페이 "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...위법 아냐"」 기사에 대한 설명(한국경제, 8.14일자)

I. 기사 내용

- □ 한국경제는「카카오페이 "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...위법 아냐"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"카카오페이는 [□]본건 관련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, [□]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되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으므로, 알리페이에게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"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Ⅱ.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

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해당여부

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**일체의 계약서**를 확인한 결과, 카카오페이가 **알리페이에게** "NSF스코어 산출·제공업무"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< 카카오페이-알리페이 계약서 >

- ① 해외결제사업 계약서(2건): Participation Agreement,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
- ② 아웃바운드(온라인/오프라인) 계약서(4건) : Settlement Services Agreement, Cross-Border Barcode Payment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, Payment Service Agreement, Technical Service Agreement
- ③ 인바운드(온라인/오프라인) 계약서(1건): Alipay Service Contract
- ④ 기타(2건): Services Agreement, Pledg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

- ② 카카오페이가 **회원가입**시 징구하는 약관* 및 해외결제시 징구하는 **동의서****를 확인한 결과, "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"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.
 - * (약관 주요내용) 서비스의 종류/이용절차 및 회사/회원의 의무 등이 주된 내용이며, 고객정보와 관련해서는 수집 내용만 존재하고, 제3자 제공 내용은 없음
 - ** **(동의서 주요내용)** PG업무(결제승인, 정산 등)를 위해 고객식별정보^{주)} 및 결제정보를 알리페이 등에 제공하는 것으로만 기재
 - 주)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와 대금정산을 위해서는, 주문·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, 본 동의서를 통해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 □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
- ③ 카카오페이가 동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"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" 사항에도 "NSF스코어 산출·제공업무"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 - * (처리위탁 주요내용) 경품 배송, 카드/홍보물 제작/발송, 청구서 중계업무 등

홈페이지 공시내용(발췌)

제4조 (개인(신용)정보의 처리업무의 위탁)
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개인(신용)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(신용)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

서 등을 계약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(신용)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. ③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<개인정보 처리방침>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(상세보기)

- ④ 대법원 판례* 등에 의거, "신용정보의 처리 위탁"이 되기 위해서는 ●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, ^②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, ^③위탁자의 관리·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 바, 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(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).
 - * 개인정보의 '처리위탁'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(2016도13263)
 - ☞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- ⑤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7조에 의거,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함에도, 본건은 감독당국에 보고한 바 없습니다.

②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

- ① 카카오페이는 ^①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(SHA256)을 사용하였고, ^②해시처리(암호화)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해당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하였으며,
 - ^③해시처리(암호화) **함수**를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.
- ② **알리페이**가 애초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(핸드폰, 이메일 등)를 요청한 이유는 동 정보를 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었고,
 - 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에,
- ⇒ 알리페이가 애플에 "특정 카카오페이 고객의 NSF스코어를 제공" 하면서,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.

③ 신용정보 부당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

-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^{*}해 왔으며,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 - * '24년 제4차 제재심(xx신협), '21년 제9차 제재심(oo저축은행), '20년 제29차 제재심(oo은행), '19년 제17차 제재심(xx은행), '19년 제13차 제재심(oo저축은행), '17년 제13차 제재심(xx생보) 등

참고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내역

□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이전목적, 예측가능성, 관리·감독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

구 분	개인정보의 처리위탁	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	
① 이전목적	위탁자 이익을 위해 처리	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	
^② 예측가능성	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	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	
	(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)	(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)	
$^{\odot}$ 관리·감독 의무	위탁자	제공받는 자	
④ 손해배상책임	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	제공받는 자 부담	
 ^⑤ 이전방법	원칙 : 위탁사실 공개	원칙 : 제공목적 등 고지 후	
· 이건당답 	예외 : 위탁사실 고지(마케팅 위탁)	정보주체의 동의 획득	

(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개인정보 처리위수탁 안내서)

- ① **애플스토어 입점**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**모두에게 이익**(PG사수수료)이 되는 업무*로, 위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- *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계약한 가맹점에서만 해외결제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양사는 수익(PG사 수수료)을 나누는 협업관계에 있으며, NSF 스코어 제공은 "카카오머니를 통한 애플스토어 결제업무"를 양사가 취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됨
- ② 카카오페이에 PG결제 등을 위해 가입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애플스토어 입점 때문에 국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.
- ③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관리·감독한 사실*이 없습니다.
 - *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업무내역(NSF스코어 평가결과, 제공방식/건수 등)을 알리페이측 보안을 이유로 확인도 못하는 상황임
- ④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간 NSF 스코어 산출·제공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부담 주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- ⑤ 카카오페이는 본 건 관련 위수탁 내용을 공시한 바 없으며,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한 바 없습니다.